



의안번호	제82호
------	------

**논산시양수기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논산시장
제출연월일	2018. 8. 28.

# 논산시양수기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82호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8. 28.  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-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한 논산시 양수기관리운영조례가 제정되어있음.
- 양수기관리운영조례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“읍·면은 읍·면장 책임하”를 “읍·면·동은 읍·면·동장 책임하”로, “관련사무담당”을 “관련업무 담당주사”로 개정함.(안 제3조)
- 나. “읍·면장에게”를 “읍·면·동장에게”로, “읍·면장은”을 “읍·면·동장은”으로 개정함.(안 제4조)
- 다. “시장·읍·면장”을 “시장 및 읍·면·동장”으로 개정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함.(안 제6조)
- 라. 제3항을 삭제함.(안 제8조)
- 마. 제1항을 “양수기의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”로 개정하고,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함.(안 제9조)
- 바. “시장·읍·면장”을 “시장 및 읍·면·동장”으로 개정함.(안 제10조)
- 사. “별표1(양수기일당사용료기준표)”를 삭제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기타사항

- 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없음
- (2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
- (3) 규제 심사 : 해당없음
- (4) 입법예고
  - (가) 예고기간 : 2018. 02. 22. ~ 2018. 03. 14.
  - (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- (5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조
- (6) 충청남도 소관 실적 : 농촌마을지원과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**논산시양수기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논산시양수기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논산시양수기관리운영조례”를 “논산시 양수기 관리·운영 조례”로,  
제3조 중 “읍·면은 읍·면장책임하”를 “읍·면·동은 읍·면·동장책임하”로,  
“관련사무담당이”를 “관련업무 담당주사가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읍·면장에게”를 “읍·면·동장에게”로, “읍·면장은”을  
“읍·면·동장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시장·읍·면장”을 “시장 및 읍·면·동장”으로 하고,  
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.

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10조제1항 본문 중 “시장·읍·면장”을 “시장 및 읍·면·동장”으로 한다.

별표 1을 삭제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희망마을건설과장	강 문 구
	희망마을팀장	김 영 천 (746-6181)
	담 당 자	최 제 용 (746-6183)



□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<u>논산시양수기관리운영조례</u></p> <p>제3조(보관 관리의 책임) 양수기를 보관하고 있는 읍·면은 읍·면장책임하에 보관하고, 관리 책임자는 <u>관련사무담당</u>이 된다.</p> <p>제4조(대부절차) ① (생략)</p> <p>②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부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<u>읍·면장에게</u> 제출하여야 하고, <u>읍·면장은</u>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③ <u>삭제</u></p> <p>제6조(대부기간) ① 대부기간은 <u>시장·읍·면장이</u>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.</p> <p>② <u>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</u> <u>기히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</u> 계산하여야 한다.</p> <p>제8조(관리 및 감독) ①·② (생략)</p>	<p><u>논산시 양수기 관리·운영 조례</u></p> <p>제3조(보관 관리의 책임) ----- ----- <u>읍·면·동은</u> <u>읍·면·동장책임하</u>----- - <u>관련업무 담당주사가</u>---.</p> <p>제4조(대부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읍·면·동장에게</u> ----- ----- <u>읍·면·동장은</u> ----- ----- ---</p> <p>제6조(대부기간) ① ----- <u>시장 및 읍·면·동장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&lt;<u>삭제</u>&gt;</p> <p>제8조(관리 및 감독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

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한 때에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사용료)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·읍·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장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2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할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일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④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10조(반환 및 변상)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시장·읍·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

<삭제>

제9조(사용료)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<삭제>

제10조(반환 및 변상) ① -----  
-----  
- 시장 및 읍·면·동장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소까지에 해당하는 운반비만 부담한다.

② (생략)
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○ 해당 없음

2. 비용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나. 추계결과

3. 작성자

희망마을건설과장 강 문 구

**○ 지방자치법**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